

부양의무자기준의 주요쟁점에 관한 빈민단체활동가 FGI연구*

김 윤 민**·허 선***

요약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양의무자기준 논의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빈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빈민단체활동가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은 기준의 엄격성과 비현실성이 야기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수급신청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한 왜곡된 제도 운영, 제도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으로 구체화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신청자의 삶에 미친 영향은 신체적·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박탈로까지 확대됨이 나타났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불합리한 절차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인격침해보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존재했던 수급의 권리성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권리로 위상이 재정립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범위와 속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FGI

* 본 논문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2017.06.09)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오랜 기간 지속되며 폐지의 필요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필요성이 확대됨과 동시에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확산되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우려는 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부담과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귀결되며 논의의 우위를 점하는 듯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의 ‘대상별’ 폐지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의 ‘대상별’ 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도자료, 2017).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조건에 노인, 중증장애인 등 ‘대상’을 강조한 정부안은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완전 폐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의 ‘급여별’ 폐지안과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대상별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기초보장제도의 잔여성과 낙인이 강화될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전제하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급여별’ 폐지안을 제안하며 급여별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김윤영·허선, 2017).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안으로 시행될 경우, 공공부조 제도 발전에 역행하고 특정 대상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수준에서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대선 과정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약속하며 논의가 진일보하는 듯 했으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정책동향을 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양의무자기준 논의에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그 근거를 검토하고,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주장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둘러싼 논의를 촉진시키고 그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현장 활동가에 대한 FGI를 진행한 이유는 이들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고통 받는 비수급빈곤층의 현실과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 활동가들은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예산상의 한계에 대한 고려는 미흡할 수 있다

는 점이 연구방법으로서의 한계이나 추후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 연구를 통해 보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한 사례에서 드러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신청자의 삶의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효과는 무엇인가?

2. 부양의무자기준을 둘러싼 주요쟁점 검토

1) 부양의무자기준의 변화 및 현황

(1) 부양의무자기준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가족부양우선 원칙을 통해 사적부양이 공적부양에 우선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는 빈곤을 가족 책임에서 가족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확대 하였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듯이 부양의무자기준은 [표 1]과 같이 2007년에는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삭제하고, 2009년에는 간주부양비 및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액 공제를 완화했으며 2015년에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등 여러 차례 법률 제·개정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

[표 1] 부양의무자기준의 변화

시기	부양의무자기준
2000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2005년	• 법 개정: 직계혈족 → 1촌 이내의 직계혈족
2007년	• 법 개정: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삭제
2009년	• 간주부양비 및 부양의무자 기준재산액 공제완화 (1) 간주부양비 40%(출가한 딸15%) → 30%(출가한 딸15%) (2) 대도시 9,500→13,300만원, 중소도시 7,750→10,850만원, 농어촌 7,250→10,150만원
2011년	• 지침 개정: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상세히 명시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신청자의 계자녀) (3)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4)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부양의무자 가구원 산정도 제외) (5)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표 1] 부양의무자기준의 변화 (표 계속)

시기	부양의무자기준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개정: 부양의무자인 경우 상세히 명시 -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임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외국인인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임 (단, 외국인이므로 수급자의 보장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음)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급여 지침 개정: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추가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

자료: 빈곤사회연대 내부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부양의무자기준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제도의 수급 요건에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혼·재혼·가족해체 증가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사적 부양을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유경 외, 2015).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표 2]와 같이 공공부조제도의 수급 조건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전제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국외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빈곤의 책임을 1차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수급 기준이 효과적인 빈곤 해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표 2] 국가별 가족부양의무 유형 및 내용

국가	유형 구분	내 용
스웨덴	북구유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8년까지 법률상으로 자녀 부양의무에 대한 조항이 존재했으나 1956년 이래로 부모부양에 대한 비용은 자녀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담 하고 있음 ⇒ 철저한 핵가족 원칙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에 근거한 사회부조와 주택수당으로 구성된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에는 부부와 18세 미만 아동만 포함
프랑스	유럽대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에 친척들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 국가가 주된 부양의무자이며 지역사회는 부양의 보완적 역할 담당 성인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부과
영국	영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의 부양 책임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인정 기본적으로 부양 책임은 가족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 핵가족 내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만을 부과

[표 2] 국가별 가족부양의무 유형 및 내용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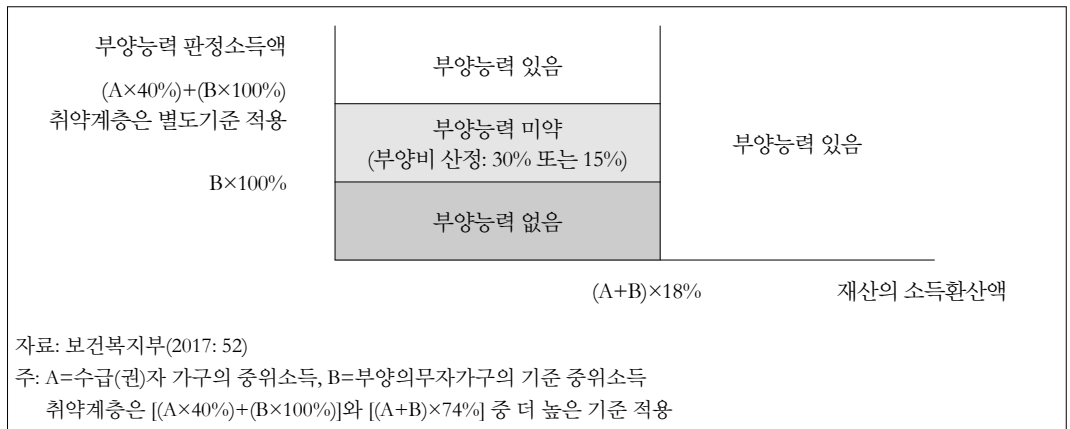
국가	유형 구분	내 용
그리스	남부유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에 대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 • 확대가족까지 부양의무 확장 ⇒ 강한 가족 프라이버시 관념 존재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친족 부양의무 존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엄격한 소득·재산기준에 근거한 자산조사: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이 존재하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요구 증가 추세로 공적부양의 확대·확립 지향

자료: 이만우(2010: 27-40) 재구성.

(2) 부양의무자기준의 현황

현재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그림 1]과 같이 수급가구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합 이상일 때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가구는 수급 탈락, 혹은 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다.

[그림 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또한 우선보장 취약계층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제도를 통해 보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나 수급자가 “취약계층으로 우선보장이 필요한

대상'인 경우이며, 수급(권)자는 우선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비용 징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후 결정한다(보건복지부, 2017: 15).

2) 부양의무자기준에 관한 주요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기준에 관한 기준의 연구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주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가 되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헌고찰, 2차 자료분석, 판례분석,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와 정부의 정책자료에서 나타난 부양의무자기준의 쟁점에 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폐지 찬성 측 주장

그동안의 여러 연구자와 단체의 문헌을 살펴볼 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크게 다섯 가지 근거로 주장한다. 첫째,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변화하는 부양의식에 상충한다. 가족이 부모 혹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로 크게 감소한 통계청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한 기능의 일부를 국가가 대체하는 부양의 탈가족화(defamilization of support)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부양의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 혹은 노인에게 대한 가족 부양을 강제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빈곤에 대한 가족 책임을 강조하여 국가의 공적 부양 책무를 희석시키고 이로 인해 가족 관계 해체가 가속화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송다영,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둘째, 부양자격의 엄격성으로 나타나는 부양의무자기준의 비현실성이다(김은하 외, 2013; 박영아, 2016; 이승호·구인회, 2010). 앞서 제시한 부양의무자기준의 변화 과정에서도 제시했듯이 부양의무자 범위의 점진적 축소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의 단계적 완화는 표면적으로 부양자격을 엄격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수급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의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사각지대는 수급권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여유진, 2004).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참여연대사회 사회복지위원회, 2013).

셋째,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에 따른 빈곤의 확대·재생산이다(여유진 외, 2009).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한 이들 중 대다수는 가족의 부양도 받지 못하여 공적 지원은 물론이고 사적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특히 근로 가능성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노인의 경우 공·사적 지원에서 모두 배제되었을 때 극심한 빈곤 상태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이만우, 2010).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들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피해자로 전락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10).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빈곤의 확대·재생산 문제는 단지 피부양자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양의무자의 빈곤을 야기한다.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 위험성이 높은’ 부양의무자에게 빈곤한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문제는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결과, 부양의무자가 차상위 또는 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즉, 부양비 지출로 부양의무자가 빈곤해지는 ‘부양의무자의 빈곤화’ 현상이 발생하여 빈곤한 이들과 그 가족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빈곤의 악순환이 나타난다(국회입법조사처, 2010; 이만우, 2010; 이지선, 2012). 이처럼 부양의무 ‘가능’으로 판정된 가구가 ‘불가능’으로 판정된 가구보다 더욱 빈곤한 상황에 놓이는 소득역전현상은 제도 운영의 비합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넷째, 부양비가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간주부양비 산정의 문제이다(송다영, 2005; 허선, 2002).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노인의 생계비 지원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양비를 추정하여 수급신청자의 소득에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양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생존이 위협 받는 문제는 간과된다.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 이행 여부 대한 정확한 조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간주부양비 적용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은 법률적 위헌성을 내포한다(김지혜, 2013; 박성민, 2016). 특히, 과도하게 요구하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는 문제는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박영아, 2016). 수급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수많은 정보의 열람과 권한 이양은 수급(권)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급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수급(권)자의 동의는 생존을 위한 피동적 순응으로 볼 수 있다(김윤민, 2016). 물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제도 운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 요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요구되는 개인정보와 수집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특히, 잠재적 부양가능성의 심사 명목으로 광범위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정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급신청자가 사적이고 구체적이며 내밀한 가족력까지 제출해야 하는 현 상황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김지혜, 2013).

이렇듯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상술한 쟁점들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빠른 시일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2) 폐지 반대 측 주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반대하거나 단계적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인한 부정수급자¹⁾ 문제가 심화된다는 우려와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을 때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를 지적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서 제시한 국회보건복지위 S위원의 발언과 같이 실제 사례를 통해 부정수급자와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가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임을 강조한다.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안 제출에 의욕이 앞서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법안의 비용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게 되면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배우자로 옮겨 놓는 등의 모럴해저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기초생활수급비 타낼 방법 고민하다가 재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뒤 가장으로 이혼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사례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정수급자가 1만 222가구에 달했는데 2010년 대비 3년 만에 270%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4월 11일, 국회보건복지위, S 위원 발언)

복지부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다. 복지부 내부자료(2017.3)에 따르면 가족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적 가정 상황의 특수성,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을 때 부당한 재산증여, 가구분리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다만, 부양의식 변화를 감안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주요 쟁점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정수급자 발생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소

1) 부정수급자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본인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수급, 2) 본인소득을 숨기고 수급, 3)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을 숨기고 수급, 4) 이미 하고 있던 부양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요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가 핵심이다.

(3) 문재인 정부의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선 및 최저보장수준을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재설정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급여별, 대상자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더불어민주당, 2017: 169). 이는 복지국가총연대회의(2017)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민주당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국민 생존권 보장 의무와 배치되는 것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특정 시점에 전면 폐지하고자 할 경우 국민적 감정 및 재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적 동의 및 재정 여건, 도덕적 해이 방지 마련 등을 고려하여 급여별, 인구집단별로 단계적 폐지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과 같이 자립이 시급한 집단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구성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폐지에 착수할 계획 수립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공공부조 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기초보장제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경우는 임기 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가 아니라 일부 완화할 뿐이고, 대대적인 예산 투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3)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기존 사례연구의 분석결과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부양의무자기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문헌연구, 양적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는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으로 수급 탈락·중단·포기를 경험한 이들의 문제에 단편적으로 접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였다. 심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고찰할 수 있고, 본 연구의 방법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연구는 전체 연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례연구도 모두다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연구의 분석방법과 결과는 정리하면 [표3]과 같다.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연구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시도한 활동가 FGI를 통해 객관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부양의무자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연구자	연구 참여자 및 분석방법	분석결과 및 정책적 제언
김상은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나 부양 의무자기준 초과로 수급받지 못한 빈곤 가구 구성원 6명 • 질적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 실제 부양여부가 확인됨 •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간주부양비 산정,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 기간 문제,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유명무실함,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구상권 청구,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등이 드러남
박향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내부자료 • 2009-2010년 부양 의무자기준에 의해 탈락한 105가구 중 노인가구 9가구 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조사시 부채상환 비용에 대하여 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을 경우 납입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야 함 • 미혼 가구가 미래에 대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재산특례기준 적용범위 완화 필요 • 행정적 재량이 아닌 명확한 지침 및 기준을 설정하여 가족 관계 단절을 판단해야 함
박지훈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내부자료 • 조사담당 사회복지 공무원 면담조사 • 수급(권)자와의 심층 면접 및 부양의무자와 전화상담조사 • 8가구 의도적 표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한 간주 부양비의 비현실성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에서 차감·제외 항목의 제한성 • 재산기준 완화, 소득으로 전환이 어려운 재산에 대한 대책 • 부양의무자기준 초과자 권리구제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정보 접근성 취약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복지 인력 문제 → 권리구제 대상 확대 필요 • 재혼한 부모가 부양의 거부·기피 할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조사과정이나 다른 가족 간 갈등 야기
조만선, 박병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가구 의도적 표본추출 • 질적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탈락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주거를 달리는 재혼한 부모의 존재로 탈락 - 배우자가 실종 상태인 며느리의 부양비로 인한 탈락 • 부양비 산정방식으로 인한 탈락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인 미혼 자녀에 대한 부양비로 탈락 - 연로한 부모가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됨 • 개선방안: 사회통념을 반영한 부양비 산정, 이혼, 사별, 미혼모 딸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 완화, 부양비 하향 조정, 부양 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제비율 완화, 부양의무자 자녀의 입차료 비용 차감, 부모와 동거하는 부양의무자 인센티브 제도
조만선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7월 1일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 탈락한 수급권자 9명 (1-2인 가구로 제한) • Giorgi 현상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 과정을 일반적 구조 진술로 도출 • 실천적 함의: 인적자본·물적 자본 네트워크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탈락한 이들의 지속적 관리 • 정책적 함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1인 가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 실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도 현실화

3. 연구방법

1) 초점집단면접(FGI)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의 접근,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문제 연구, 경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에 접근하였고 다양한 질적연구방법 중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FGI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 구성원간의 상승효과를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Padgett, 2005). 또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공통된 주제에 관한 경험과 의미, 이해를 도출하고 연구 주제를 다층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aughn et al., 1996). 이러한 FGI 특성이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하여 폐지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의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한다.

2) 참여자 선정 방법 및 자료분석 방법

(1) 참여자 선정 방법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표본 선택이 중요한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연구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중요하며(Padgett, 2005) 사례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사례 수가 아닌, 어떤 사례이며 무엇을 대표하는지 여부이다(Flick,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선정하였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제도 변화가 당사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변화에 따른 당사자들의 감정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 동행을 통해 신청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본 경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활동가 FGI를 통한 분석자료 구성은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고통받는 비수급빈곤층의 현실을 체감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활동가들로 FGI 참여자를 구성해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논의를 추동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 구성에 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다. 이를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단계와 기준을 거쳐 본 연구에 참여할 활동가를 구성하였다. 먼저, 수급(권)자에 대한 거리상담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빈곤한 이들의 수급권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 중 상담과 신청동행을 직접 수

행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한 경험이 풍부한 3년 이상 경력의 활동가들로 본 연구에 참여 가능한 활동가 명단을 구성하였다. 이들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행동을 기획, 추진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론화에 긴밀히 관여한 이들로 참여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올해로 5년이 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서 당사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활동가들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FGI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성된 부양의무자기준의 핵심 쟁점을 FGI 진행 시 질문으로 활용하였다. 활동가 FGI는 2017년 5월 30일 약 2시간 가량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전 참여자들의 동의 후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한 녹취록을 분석하였다. FGI 참여자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FGI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활동가 경력
활동가 A	남	29	3년
활동가 B	여	29	3년
활동가 C	여	34	8년
활동가 D	남	38	7년
활동가 E	여	33	8년

(2) 자료분석방법

활동가 인터뷰 내용의 분석주제는 논의의 토대에서 살펴본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신청자 삶에 미친 영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효과와 폐지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각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 제시를 시작으로 내용에 따른 연계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구조화 면담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진행지는 관련 주제만 제시하고 각 주제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녹취된 질적 자료는 현상에 대한 편견은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자가 주제의식을 갖고 자료를 분석하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김수영, 김이배, 2014). 이를 위해 자료를 반복해서 듣고, 전사한 자료를 읽으며 특정 용어 또는 주제로 자료를 범주화하고 내용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제별 코딩 분류법을 활용하였다(Creswell, 2010).

4. 분석결과

1)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FGI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 분석 결과,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으로 [표 5]와 같이 네 개의 상위 주제와 이에 따른 9개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표 5]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에 관한 주제 분석

상위주제	하위주제
부양의무자기준의 엄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신청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한 부양의무자 • 수급신청자의 생계유지와 무관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 신청자의 생존 위협 • 정서적 부양 방기를 조장하는 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비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한 복잡한 가족관계 • 부양을 담보하지 않은 간주부양비의 허구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한 왜곡된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 불균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한 新계급
제도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의 대가로 요구하는 노력 • 잠재적 범죄자 취급

(1) 부양의무자기준의 엄격성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수급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켜 빈곤한 이들 스스로 수급 신청을 포기하게 만든다. 또한 수급신청자의 생계유지와 무관한 부양의무자 재산이 수급신청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형성한다. 선별적 복지 제도의 엄격한 수급 기준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표적화하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제도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빈곤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치닫는다.

(가) 수급신청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한 부양의무자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전환은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우선적으로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제도의 기저에 작동하고, 가족부양우선주의가 여전히 국가의 정표정

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락의 ‘불안감’을 조장하여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제도 존립의 목적을 훼손한다.

“신청했는데 안됐더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는 분들은 벌써부터 겁을 먹는 거예요. 나도 애가 있는데 나도 안되겠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활동가 B)

(나) 수급신청자의 생계유지와 무관한 부양의무자 재산이 수급신청자의 생존 위협

일반적으로 재산은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 중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소득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신청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현행과 같이 수급 기준에 반영되어야 함은 당위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환금성과 안정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재산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신청자의 생계유지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상담한 사례들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 신청자의 생계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수년간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급신청자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이들은 가족과 국가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시골에 계시면서 집을 가지신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활동가 A)

“40년 동안 가족관계가 단절되신 분이예요. 어릴 때부터 맞아서 20살 되기 전에 가출을 했었고 그리고 있다가 노숙하고, 오랫동안 노숙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몸이 낡고 낡았으니깐 고장이 나니깐 일자리도 못 얻고 그래서 수급 신청하려고 몇 년 전에 활동가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부모님이 4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중략)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폐지수집 하셨어요.” (활동가 C)

(다) 정서적 부양 방기를 조장하는 제도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야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경제적 부양이 어려운 이들에게 정서적 부양의 기회와 권리마저 박탈한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정서적 부양이 가능한 이들과도 ‘생존을 위한 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이 과연 정당한지, 수급 탈락이 두려워 공중전화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부정수급자로 통칭하는 것이 타당한지 반문한다.

“자녀들이랑 연락을 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연락을 하는 것이 걸리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중략)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못하겠는 거죠.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 이게 계속 걸리니까.” (활동가 C)

(2) 부양의무자기준의 비현실성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모두 반영하여 제도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도 구성을 위해서 보편적인 상황을 설정한다. 문제는 제도가 결정한 보편적 상황이 수급 기준을 구성하고 빈곤한 이들의 생존을 결정하는데 이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제도가 포괄하지 못한 복잡한 가족관계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가족관계는 현상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제도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진 가족관계가 수급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제도가 담아내지 못한 빈곤 가족에 배태된 문제들이 가족 불화에 따른 관계 해체, 가정 폭력, 혼외자 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수급신청자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 안전을 위협받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살기 위해 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소요되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빈곤한 이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훨씬 비현실적이라는 활동가의 지적처럼(활동가 E) 사회구성원의 안전망이 되어야 할 제도가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순된 상황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부양 책임을 강제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난하게 되는 역사가 굉장히 깊운데 그 과정에서는 가족과의 불화라든지 관계 해체는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략)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 때문에 아예 신청서류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활동가 A)

“제도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 라는 것이 한국의 복잡한 가족관계를 못 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가 B)

“가정 폭력 때문에 도망쳐서 이 남편분이 교정시설 계시는 동안 이혼처리를 따로 하신 분인데 이 과정에서 내 주소지가 드러나면 다시 남편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는데 이게 호소가 안되는 거예요.” (활동가 E)

(나) 부양을 담보하지 않은 ‘간주부양비’의 허구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이행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주부양비를 추정하여 적용하는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으로 장기간 지적되어왔다. 적어도 부양의무자기준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양비가 지급 될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로 받아들여져 수급비에서 차감되고 있다. ‘추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허구’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간주부양비 적용은 용인될 수 없다.

“법원에서 판결된 양육비도 안주는데 간주부양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한 양육비도 안주는 사람들한테. 현실과 맞지 않는 거죠. 진짜 딱 말 그대로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활동가 E)

(3)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한 왜곡된 제도 운영

급여납용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엄격한 기준과 행정상 필요한 복잡한 자료들은 수급 회피 원인으로 작용한다(Stuber & Schlensinger, 2006). 이 과정에서 담당자와 수급신청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형성된 권력 관계는 ‘신청자와 ‘심사자’라는 위계적인 지위로 구체화되어 수급자를 더욱 취약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가) 과도한 제출 자료 요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약 48종에 이르는 정보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 수급자가 방대한 정보에 대한 권한을 많은 기관에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급신청자에게 각종 공적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심지어 임의서류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요구한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신청동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조회하고 열람

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수급신청자에게 요구하는 문제에 항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공적자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수급신청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담당자의 역할을 수급신청자에게 전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로 볼 수 있다.

“행복이음이 도입되고 나서 부정수급 색출에 대한 기초들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임의 서류에 대한 것들이 더 강화된 것 같고 임의서류들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신청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중략) 필수서류만 내면 되게 되어 있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어쨌든 관계단절이나 거부, 기피에 대해 상황 시 또는 본인이 직접 못가는 상황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공유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어요.” (활동가 A)

“서류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관계를 약간 이게 사실 지침이랑 안맞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공적자료를 1차 자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자료가 있어도 어차피 공적자료를 1차 자료로 사용해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에게 당신이 이렇게 써서 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던지. 아니면 왜 거짓말을 했냐 라든지.” (활동가 E)

(나) 불균등한 권력관계가 형성한 新 계급

수급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통제 권한을 보유한 담당자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서류와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수급신청자에게 어려운 존재이다. 이들은 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권한이 하부 기관과 담당자에게 전가된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복지권력이다(정수남, 2014). 새로운 복지권력의 심사결과로 자신들의 생계가 좌우된다고 생각한 수급신청자는 담당자의 말투와 표정, 행동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급 신청에 동행한 활동가들은 모두 신청자들이 담당자 앞에서 위축된 상황을 목격하였다.

“스트레스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차갑더라고요. 딱딱하고 굳은 얼굴로 일단은... 수급자들이 재차 와서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급여가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도 인상을 쓰면서.. 처음 대할 때부터 이렇게 대하니깐.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압적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물어도 되는지..” (활동가 C)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1차 자료를 당신 스스로 제출하게 하고 여기에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사람들은 심사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위치가 지어지는 거죠.” (활동가 E)

(4) 제도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

수급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패자이자 도덕적 측면에서 부정직한 이들이라는 이중의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를 향한 부정적 평가인 낙인이 발생하고, 수급자는 자존감 상실과 굴욕감을 경험한다(Link & Phelan, 2001).

(가) 생존의 대가로 요구하는 ‘노력’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강조한 권리성은 수급 신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말을 통해 수급이 여전히 권리로 인정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수급신청을 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죠” 식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활동가 B)

(나) 잠재적 범죄자 취급

부양의무자기준의 부정적 측면은 수급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표준적으로 설계한 규칙과 절차에 적용해야하는 조사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다(Lipsky, 1980).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 이기보다 하나의 ‘사례’로 가치 절하된 수급신청자는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수급신청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취조하는 듯한 담당자의 질문 행태에 분개하였고, 이로 인해 담당자와 다툼 경험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기도 하고 범죄자 느낌이 들잖아요. 너 혹시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돈 받는 거 있는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것도 있었었고.” (활동가 B)

“기초생활 수급 신청 하시는 분들이 신청 과정에서 부터 비슷한 질문을 네 차례, 다섯 차례 씩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본인들로 하여금 이미 취조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주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 수급이 필요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화가 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활동가 E)

2)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신청자의 삶에 미친 영향

다음으로 FGI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신청자의 삶에 미친 영향에 따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세 개의 상위주제와 이에 따른 5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표 6]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신청자의 삶에 미친 영향 관한 주제 분석

상위주제	하위주제
신체적 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무게에 짓눌린 상흔
심리적 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 갖고 있었던 부채감 상기 • 삶에 깊숙이 침투한 불안감과 무력감
기회의 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받고 행복할 기회 박탈 •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 박탈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또는 중단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축하받고 행복할 기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한다.

(1) 신체적 고통: 삶의 무게에 짓눌린 상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고, 가족관계 단절을 소명하기까지 소요된 오랜 시간은 수급신청자의 건강을 앓아간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이후, 오랜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수급권을 얻었지만 건강을 잃고 늙어가는 당사자들의 삶을 전한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삶이 빈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은 수급자가 되셨어요. 엄마아빠 돌아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런 경우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뒤늦게 몸 다 망가진 상태에서 수급자가 되어서 얼마나 더 나아졌겠어요. 몸 다 망가지고.. 정말로 수급비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으로 얼마나 더 건강해 지겠어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버리고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고.. 본인 건강 챙길 수 있는 시기도 이미 다 지난 상태에서 다 늙어서 이제 수급자가 된거죠. 그렇게 늙어가는 거죠.”(활동가 C)

(2) 심리적 고통

(가) 가족에게 갖고 있었던 부채감 상기

수급신청자는 본인이 부모 또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급신청자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숨기고 싶은 가정사의 고백을 강요받는다. 현재도 수많은 수급신청자들은 수급 기준 충족 여부 조사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생존의 대가로 치르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치절하다’라고 표현하며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원래 가족이라는 틀로 묶여져 있는데 서로가 가족으로써의 역할을 잘 못했던 부채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수급 신청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두 번째 피해를 또 줘야하나 이런 것들이..” (활동가 D)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딸들 이름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중략) 할아버지는 딸이 이름까지 바꿨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서 그 자리에서 영영 우셨거든요. 울먹이셨어요. “내 딸이 이름도 바뀌어.” 이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치절하다.” (활동가 B)

(나) 삶에 깊숙이 침투한 불안감과 무력감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 부양의무자의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 등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수급 탈락에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평가한다. 수급 탈락이 곧 절망인 이들은 삶의 사소한 변화마저 모두 수급 유지 여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늘 수급 탈락이라는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울면서 전화하는 이들과 마주해 온 활동가들은 제도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목도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해를 체감하고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이 최후의 보루라는 게 너무 쉽게 있었다가 없어지고.. 자기 삶이랑 관계가 없는데.. 그제 주는 스트레스나 불안함이라는 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중략) 원래 건강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완전 심리적으로 나락으로 되어 버리는 거죠.” (활동가 E)

(3) 기회의 박탈

(가) 축하받고 행복할 기회 박탈

일반적으로 결혼, 자녀의 취업, 승진, 급여 인상은 축하 받을 일이나 수급자에게는 급여의 중지 또는 삭감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축하 받을 일에 충분히,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수급자의 삶을 지켜본 활동가들은 제도로 인해 행복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수급(권)자의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한동안은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 사위나 며느리 혹은 계모 계부의 소득이나 재산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 (활동가 B)

“아직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애들이 소득이 생기면 조사가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때부터 자기 생활이 불안해 지니까” (활동가 D)

(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 박탈

부양의무자기준이 존재하는 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계획은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사치이다. 성인이 되어 취업에 성공한 자녀는 취업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부양의무자라는 무게감을 견뎌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는 취업과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된 자녀가 결국에는 가족과 단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를 통해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당위성을 강하게 개진하였다.

“큰 딸이 20살이 되면서 근로능력이 생긴거죠. 대학을 가려고 했다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일단 대학 등록금을 벌어서 나중에 가야겠다하고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자마자 구청에서 압박이 들어온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득이나 이런 것을 다 신고를 해라. 그리고 얼마 이상 되면 간주부양비가 부과되고 이렇거다. (중략) 취업을 하고 나서 열흘도 안되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집에서 혼자 방에서 혼자 있었던 거죠. (중략)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활동가 A)

“저당 잡힌 미래들도 사실은 모두다 사회적 비용인 거고 경제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활동가 B)

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효과

(1) 삶을 옥죄는 감정으로부터의 탈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수급의 ‘권리성’이 회복된다면 지금까지 가족관계단절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수급신청자가 감내해야 했던 비참함, 두려움, 불안의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중단 사례를 전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한 감정적 단어는 ‘불안’과 ‘비참함’이었다. 수급신청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신청 동행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감정을 지배한 불안하고 비참함으로부터의 탈출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가져올 효과의 시작이 될 것이다.

“비참하잖아요. 부양의무자. 소명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비참함,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런 심리적 압박에서부터 그래도 자유롭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그나마 편할 것 같아요. 자라나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감사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구나 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청년들한테는 미래의 꿈을 한번 꾸고 자기 꿈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는 거니깐. 어쨌든 폐해인 것 같아요. 당장 없애야죠. 부양의무자기준은 서로에게 불편하고 서로에게 민폐라고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활동가 C)

(2)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신념체계가 복지형태 변화의 중요한 요인(George & Wilding, 1994)임을 전제했을 때,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변화하는 양상이 포착된 최근의 상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논의의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지금 당장은 수급(권)자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대상 확대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안전망 강화를 의미한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의 예상처럼 이를 통해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략) 복지에 대한 신뢰.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갖는 신뢰.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활동가 E)

4)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방향: 급여별 폐지, 구체적 계획 공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법과 순서에 대한 의견은 급여별 폐지와 인구사회학적 폐지로 압축되고 있다. 급여별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전개 과정에서는 어떠한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구사회학적 기준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전개 과정에서는 어떠한 이들의 욕구가 시급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급여별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며 인구사회학적 폐지 방식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개별 구성원의 욕구가 배척하는 권리가 아닌 '동시에 보장' 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강조하며 인구사회학적 폐지 논의의 핵심인 '대상별 욕구의 우선순위'를 부적절한 논쟁으로 평가한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이것을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욕구가 더 우선하는지에 대한 이상한 논쟁을 사회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부모 가구와 노인 중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어느 쪽이 더 급해? 장애인 가구와 노인 중에 어느 쪽이 더 급해? 이런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욕망이 우선하는지, 혹은 누구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은 포기해야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생존권이라는 것은, 서로 배척하는 권리가 아니라 동시에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기준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급여별로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활동가 E)

5. 결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근거를 검토하고, 완전 폐지를 제안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주장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상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쟁점은 폐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된다. 찬성측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의 사각지대 문제를 비롯하여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빈곤 책임을 지우는 부양의무자기준은 부모 혹은 노인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급격히 낮아지는 부양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부양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가구의 빈곤이 심화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점,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는 부

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구축한다. 반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자체를 반대하거나 단계적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측의 주요 논거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인한 부정수급자 문제의 심화와 폐지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로 귀결된다.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입장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반대하는 측의 논거인 부정수급자 문제와 막대한 예산 소요라는 현실적 한계와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FGI에서 도출된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은 부양의무자기준의 엄격성, 비현실성, 왜곡된 제도 운영, 낙인 발생으로 드러났다.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신청자의 생계유지와 무관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수급 탈락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정서적 부양마저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한다.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기준은 복잡한 가족관계 ‘현실’을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양을 담보하지 않은 간주부양비를 책정하여 빈곤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게다가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은 수급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수급이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가 내포된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권)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함께 수급(권)자가 가족에게 갖고 있었던 부채감을 상기시키며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논의는 앞으로도 임기내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점진적 완화를 취한 정부측간의 어느 정도의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빈곤층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의 심각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일깨워 준 본 연구결과가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된 정책결정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주장의 일부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라는 의심이 전제된 상황이 수급(권)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함으로써 수급(권)자에 대한 실천현장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활동가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반대하는 측의

논거인 부작용(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분명히 중요한 사항인 만큼 현장 공무원과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를 진행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논의에 접근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201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 제113호.
- 김수영, 김이배(2014).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의 실천에 미친 영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91-126.
-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 전망과 공시간 부양분담 방안. (연구보고서 2015-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민(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담론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윤영, 허신(2017).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3-58. (2017.06.09).
- 김은하, 박경하, 김성훈, 서소혜(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김지혜(20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41(3). 111-135.
- 더불어민주당(2017). 나라를 나라답게: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박성민(2016).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보장법학. 5(1). 73-101.
- 박영아(2016).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사회보장법학. 5(1). 103-129.
- 보건복지부(2015).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2017).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2017). [보도자료]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 송다영(2005). 가족부양쟁점에 관한 일고찰: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143-164.
- 신경식, 서아영(역) (2011). 사례연구방법. R. K. Yin, (1994). *Case study research*. 서울: 한경사.
- 여유진(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4(1). 3-29.
- 유태균(역) (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D.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1998). 서울: 나남.
- 이만우(201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 113. 국회입법조사처.
- 이승호, 구인회(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30(1). 29-61.
- 임은미, 최금진, 최인호, 허문경, 홍경화(역) (2009). 질적연구방법. U. Flick.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2002). 서울: 한울.

- 정수남(2014). '잉여인간', 사회적 삶의 후기자본주의적 논리. *한국사회학*. 48(5). 285-320.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1997). 서울: 학지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13). [논평] 부양의무자기준, 몇 명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복지동향* 180. 59-6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허선(200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동향*. 42. 8-11.
- George, V., & Wilding, P. (1994). *Welfare and ideology*.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363-385.
- Lipsky, M.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Oyserman, D., and Swim, J. K. (2001), Stigma: An insider's 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1-14.
- Stuber, J. and Schlesinger, M. (2006). Sources of stigma for means-tested government programs. *Social Sciences & Medicine*. 63. 933-945.
- Vaughn, S. R, Schumm, J. S. & Sinagub, J. M. (1996). *Focused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Abstract ▶

The Activist FGI study on the main issu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Kim, Yun Min* · Huh, Sun**

This study approached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with the conscious of the problems that the obligation for supporting obedience infringes the right to maintain human life and undermines the purpose of the last system of social safety net. For this purpose, the civil society activist FGI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urgency of abolition of the obligation to obey the duty of support and securing the just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s of the support obligation standards are embodied as stigmatization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system, distorted system operation caused by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the problem that the unreasonable result caused by the rigidity of the standard and the unrealistic threatens the survival of the applicant.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impact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on the applicant's life extends not only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but also to the deprivation of opportunity to design the future.

Key Word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FGI

◆ 2017. 7. 30. 접수 / 2017. 9. 13. 1차수정 / 2017. 9. 19. 게재확정

*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